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방 송 통 신 설 비 의 기 술 기 준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갖추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실질적인 용도에 맞게 방송통신설비 기준을 조정하고,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설 확보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호·제17호 및 별표 3)

종전에는 모든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설과 층구내통신설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및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설만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설 확보기준을 완화함.

나.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강화(안 별표 4)

1)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 등까지 중

전에는 단위세대당 또는 업무구역당 구내통신 회선 수를 1회선 이상 확보하거나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구내통신** 회선 수를 1회선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모두를 확보하도록 함.

- 2)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는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6. 20. ~ 8.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고속·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

성 증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주거목적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2)의 오피스텔(이하 “주거목적오피스텔”이라 한다)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는 것

제19조제2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주거목적오피스텔”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또는 주거목적오피스텔”로, “확보하여야 하며”를 “확보해야 하며”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

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주거목적오피스텔”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회선 수 확보기준란 가목 중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광섬유케이블 8코어”를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로,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회선 수 확보기준란 가목 중 “세대단자함”을 “실단자함”으로,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광섬유케이블 8코어”를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로, “세대단자함”을 “실단자함”으로,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한다.

별표 4 비고에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위 표에서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이란 빛의 전파 형태가 한 가지인 광섬유케이블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실단자함”이란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업무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중 8코어 이상은 국선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목적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의2. (생략) 16. “주거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정의) ①----- ----- ----. 1. ~ 15의2. (현행과 같음)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하 “주거목적오피스텔”이라 한다)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는 것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	17. -----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을 말한다.

18. (생략)

19. “저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이하, 교류는 6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0. “고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1. “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22. (생략)

② (생략)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 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
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
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
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
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

---- 업무시설(주거목적오피
스텔은 제외한다)-----.

1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 확보) -

-----.

1. (현행과 같음)

2. ----- 공동주택 및
주거목적오피스텔-----

---- 확보해야 ----.

3. -----

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나. (생략)

----- 공동주택 또는 주거목적오피스텔-----

----- 확보해야 하며-----

----- 확보해야 한다. -----

----- 않고 -----

가.·나.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433